

상생 e-안심팩토링 업무협약서

(구매기업용-e-안심팩토링대출 및 포괄 승낙방식용)

주식회사 **하나은행** 앞

주식회사 하나은행(이하 “은행”이라 함)과 _____(이하 “구매기업”이라 합니다.)은 상호협력하여 구매기업의 협력기업에 대한 납품대금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한 은행의 「매출채권(팩토링)거래」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(이하 “이 협약”이라 합니다)을 체결하고 이 협약에 「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」, 「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」 및 「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」이 적용됨을 승인합니다.

제 1 조 (목적)

이 협약은 구매기업의 협력기업에 대한 납품대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은행이 구매기업의 협력기업(아래 제 2 조에서 정의한 바에 따릅니다)에 대하여 「매출채권(팩토링)거래」를 지원함에 있어 양 당사자 사이의 효율적인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 2 조 (협력기업의 정의)

이 협약에서 협력기업이라 함은 구매기업에게 물품(용역 포함, 이하 같습니다)을 납품하는 거래기업 중 은행으로부터 이 협약과 관련된 매출채권(팩토링)거래에 따른 대출을 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에 대하여 현재 가지고 있거나 장래 가지게 될 외상매출채권(이하 “외상매출채권”이라 합니다)을 은행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은행과 체결한 기업을 말합니다.

제 3 조(업무의 방법)

- ① 이 협약에 의한 거래는 구매기업과 협력기업간 경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재화 및 용역 거래를 하여 협력기업이 구매기업에 대하여 외상매출채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적용합니다.
- ② 이 협약 및 은행과 협력기업 간 체결하는 별도의 약정에 따라, 구매기업의 채권명세통보가 있는 때에 은행은 협력기업의 외상매출채권을 일정한 조건으로 매입하며, 해당 매입대금은 원칙적으로 외상매출채권의 결제일에 지급합니다. 다만, 은행은 협력기업이 결제일 전 지급 요청을 하는 경우 협력기업을 채무자로 한 상환청구권 없는 방식의(without recourse) 전자방식 외상채권대출(이하 “외상채권대출”이라 합니다)을 실행하여 지급할 수 있고, 협력기업이 하위 협력기업에 대한 구매자금 결제를 목적으로 상생벤더구매론의 지급승인을 위한 지급승인명세를 전송할 경우 하위 협력기업 앞으로 지급승인(이하 상생벤더구매론의 개별대출이 실행된 경우 및 지급승인으로 은행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“상생벤더구매론”이라 합니다)할 수 있습니다.
- ③ 은행은 외상채권대출 및 상생벤더구매론이 실행된 경우에 외상매출채권의 결제일에 구매기업을 채무자로 하는 당일 만기 대출을 실행하여 협력기업을 채무자로 한 외상채권대출 및 상생벤더구매론을 상환처리하고, 구매기업의 결제대금이 입금되면 해당 금액으로 당일 만기 대출을 상환처리합니다.
- ④ 외상채권대출 또는 상생벤더구매론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구매기업이 결제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 은행과 협력기업간 체결한 별도 약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, 은행은 매입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협력기업에게 해당 외상매출채권을 환매합니다.

제 4 조 (기본 협약사항)

- ① (정보교환)
양 당사자는 협력기업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상호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니다.
- ② (외상매출채권의 양도)
은행이 협력기업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, 은행은 협력기업으로 하여금 그 양도사실을 지체없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구매기업에게 통지하도록 하거나, 협력기업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직접 그 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구매기업에게 통지합니다. 이에 대해 구매기업은 제 4 항에 명시된 사유 등이 없는 한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.

③ (장래채권이 매 건별로 확정되었을 경우의 통보)

1. 구매기업이 전항에 따라 협력기업으로부터 양도사실을 통지받은 외상매출채권이 구매기업과 협력기업간의 실제거래에 따라 매 건별로 구체적으로 확정된 경우, 그 확정일로부터 일내(또는 지체없이) 구매기업은 양 당사자가 사전에 협의한 전산상의 방법을 이용하여 그 확정된 채권의 명세를 은행에게 통보합니다. 구매기업은 은행에 대하여 구매기업이 이와 같이 통보하는 채권의 금액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합니다.
2. 양당사자가 사전에 협의한 전산상의 방법을 이용하여 매 건별로 확정된 채권의 명세를 통보함에 있어서 해킹 등 외부요인에 의하여 구매기업이 하지 않은 통보가 있거나 통보내용이 변경됨으로 인해 어느 당사자나 양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, 은행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은행이 부담하고, 구매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는 구매기업이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.
3. 외상매출채권의 지급기일은 발행일(통보일)로부터 180일 이내에서 정하기로 합니다.

④ 구매기업이 전항의 채권명세통보를 함에 있어서 그 통보를 하기 전에 아래 각 호와 같은 사유(협력기업의 제 2 항에 의한 통지 이전에 발생한 사유를 포함합니다)가 발생한 경우, 구매기업은 은행에 대하여도 그러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권리를 「그 통보 전까지」 주장, 행사할 수 있습니다. 구매기업이 아래 각 호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금전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항의 통보를 함에 있어서 그 채권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. 이 항에 의하여 구매기업이 가지는 권리는 제 2 항 후문에 의한 이익을 보류하지 않는 승낙으로 인하여 방해 받지 않습니다.

1. 구매기업이, 협력기업이 당시까지 납품한 물건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2. 구매기업이 협력기업에 대하여 그 납품대금을 변제하는 등 납품대금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
3. 구매기업이 협력기업에 대하여 반대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(통보를 할 때까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합니다)
4. 협력기업의 채권자로부터 압류, 가압류가 있거나 협력기업이 제 3 자에게 외상매출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통지한 경우
5. 전산조작오류 등 외상매출채권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
6. 기타 구매기업이 협력기업에 대한 납품대금채무의 성립, 존속,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

⑤ (외상채권대출의 취급 및 제한)

은행은 제 3 항에 따라 구매기업으로부터 통보받은 외상매출채권의 명세를 기초로 하여 협력기업별 통보금액 범위 내에서 협력기업에게 상환청구권이 없는(without recourse) 외상채권대출을 취급할 수 있기로 합니다. 그러나 협력기업이 「신용정보관리규약」상 연체 등 정보가 등록되거나 기타 은행의 내규 상 여신의 비적격자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전산 상 장애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은행은 즉시 그 사실을 구매기업과 협력기업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.

⑥ (상생벤처구매론의 취급 및 제한)

은행은 제 3 항에 따라 구매기업으로부터 통보받은 외상매출채권의 명세를 기초로 하여 협력기업별 통보금액 범위 내에서 협력기업에게 상생벤처구매론을 취급할 수 있기로 합니다. 은행과 협력기업과의 별도의 약정에 따라 협력기업이 하위 협력기업에 대한 구매자금 결제를 위하여 구매기업으로부터 통보받은 외상매출채권을 선택하여 은행으로 하여금 하위 협력기업에 대한 지급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은행은 지급승인에 응할 수 있습니다. 상생벤처구매론의 취급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은행과 협력기업 간 체결한 별도의 약정에 따릅니다.

⑦ (양도받은 채권의 관리 및 통지)

구매기업은 은행이 양도받은 협력기업의 외상매출채권을 성실히 관리하여 은행의 협력기업에 대한 대출금 채권보전에 적극 협조하고, 협력기업의 채권자가 위 외상매출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였다거나 협력기업 으로부터 제 3 자에게 위 외상매출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받는 등 은행이 협력기업으로부터 양도받은 외상매출채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기로 합니다.

⑧ (외상매출채권의 지급)

1. 구매기업은 제 3 항에 따라 은행에게 전산으로 통보한 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는 그 명세에 기재된 지급기일에 은행의 영업시간 이내에 아래와 같이 본인 명의의 계좌로 그 명세에 기재된 외상매출채권 대금을 입금하기로 합니다.

(하나은행에 개설한 본인명의로의 결제계좌와 관련된 사항을 직접 기재합니다.)

| 예금주 | 예금주 사업자번호 | 계좌번호 |
|-----|-----------|------|
| | | |

- 만기도래된 외상매출채권 대금은 별도의 청구서 없이 인출하여 외상채권대출 및 상생벤처구매론 취급분을 우선 변제하고, 미취급 분은 접수일자 순,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협력기업에게 지급처리하기로 합니다.
- 결제계좌는 전용계좌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, 부득이한 사유로 통장예금자동대출 계좌나 당좌대출 계좌를 결제계좌로 지정한 경우 영업시간중 구매대금 결제로 인하여 일중대출이 발생하더라도 대출취급 및 이자징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.
- 지급기일에 구매기업이 제 1 호에서 약정한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협력기업의 매출채권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 2 호에서 정한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협력기업의 대출금을 우선 상환하기로 합니다.
- 협력기업의 외상채권대출 신청 또는 상생벤처구매론 신청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은 구매기업으로부터 입금받은 채권대금을 그 지급기일에 별도의 수수료를 공제함이 없이 제 2 호의 방법으로 협력기업에게 지급처리하기로 합니다.

⑨ (외상매출채권의 취소 및 변경)

구매기업이 제 3 항에 따라 은행에게 외상매출채권 명세를 전산으로 통보한 경우,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 전 은행영업일까지 구매기업은 협력기업으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의 하자, 전산조작오류, 기타 사유를 이유로 「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은행에게 외상매출채권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기로 합니다. 그러나 은행이 구매기업으로부터 전산통보를 받고 그에 기초하여 제 5 항 및 제 6 항에 따라 협력기업에게 외상채권대출 또는 상생벤처구매론을 실행한 후에는 구매기업은 외상매출채권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, 구매기업은 외상매출채권 명세에 따른 금액을 제 8 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변제하기로 합니다.

⑩ (외상매출채권 지급채무의 범위)

제 3 항에 따라 구매기업으로부터 통보 받은 외상매출채권의 명세를 기초로 하여 외상매출채권금액 범위 내에서 은행이 협력기업에게 외상채권대출 또는 상생벤처구매론을 실행한 이후에는, 구매기업은 협력기업의 채권자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의 통지를 받거나, 협력기업으로부터 제 3 자에게 외상매출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받거나, 세무서 또는 조세공과당국으로부터 체납처분 통지를 받는 등 외상매출채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외상매출채권의 지급기일에 은행에게 그 대금을 제 8 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변제하기로 합니다.

⑪ (외상매출채권의 환매)

- 은행은 제 5 항 및 제 6 항에 따라 외상채권대출 또는 상생벤처구매론이 실행되지 않은 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협력기업에게 환매하기로 합니다.
 - 구매기업이 지급기일에 외상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지 못하는 때에는 자동환매되는 것으로 합니다.
 - 구매기업이 매입한 상품의 수량, 품질, 가격, 사후관리 등 상거래 관계로 말미암은 사유로 외상매출채권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자동환매되는 것으로 합니다.
 - 은행이 지급기일 전이라도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지급 거절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은행의 청구에 따라 협력기업이 환매하기로 합니다.
- 제 1 호에 따라 환매되는 경우에는 환매되는 시점부터 은행은 외상매출채권 매입대금의 지급의무가 소멸되고, 구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 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며, 재양도 절차를 취하기로 합니다.

⑫ (외상매출채권의 기본계약 등의 변경 통지)

구매기업과 협력기업 간에 체결한 기본계약(협력기업이 은행에게 양도한 외상매출채권의 기본계약)을 변경 또는 추가로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은행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.

제 5 조 (협력기업에 대한 채권발행한도, 총 대출한도 및 지급의무)

① 은행은 구매기업의 협력기업에 대한 매출채권(팩토링)거래 중 채권발행한도, 외상채권대출 및 상생벤처구매론(이하 제 5 조 및 제 6 조에서 “대출”이라 합니다)의 총 대출한도와 대출이자의 계산을 다음과 같이 적용하기로 합니다.

(거래조건에 대한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“□”에 “✓” 표시 및 관련사항을 직접 기재합니다.)

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협력기업에 대한 채권발행한도 | 금 원 | | | | | | |
| 협력기업에 대한 총 대출한도 | 금 원 | | | | | | |
| 이자율 등 | □ 고정금리 | □ 협약기간 만료일까지 연()% | | | | | |
| | □ 변동금리 | □ 기준금리() + ()% | | | | | |
| | | □ 기준금리() + 기간별가산금리 | | | | | |
| | | 1~15 일 | 16~45 일 | 46~75 일 | 76~105 일 | 106~195 일 | 196~285 일 |
| | ()% | ()% | ()% | ()% | ()% | ()% | ()% |
| 지연배상금률 | 지연배상금률은 제 5 조에 의해 결정된 이자율에 아래의 연체가산율을 더하여 결정합니다. 단, 최고지연배상금률은 연 %로 합니다. 연체가산율이 ()개월 이하인 경우 : 연 % 연체가산율이 ()개월 이하인 경우 : 연 % 연체가산율이 ()개월 초과인 경우 : 연 % | | | | | | |
| 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방법 | 1년을 365일(윤년은 366일)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. | | | | | | |
| 변제 방법 | 개별 외상매출채권의 지급기일에 변제하기로 합니다. | | | | | | |

※ 은행영업시간 마감 이후 지정계좌 입금분은 당일 중 변제처리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② 구매기업은 제 1 항에 의해 대출 취급된 외상매출채권에 대해 변제의무를 집니다.
- ③ 구매기업으로부터 통보받은 외상매출채권의 명세를 기초로 하여 은행이 협력기업에게 대출을 취급한 경우, 만기일에 구매기업 명의의 “당일만기 외상채권대출(이하 “당일만기대출”이라 합니다)”을 실행하여 협력기업의 대출을 상환합니다.
- ④ 구매기업 명의로 실행된 “당일만기대출”을 당일중 상환시 이자는 부담하지 않기로 합니다. 다만, 당일중 상환 되지 않은 “당일만기대출”에 대하여는 당일부터 제 1 항에서 정한 지연배상금률 및 방법으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.

제 6 조 (협력기업의 대출신청 방법 및 대상)

- ① 협력기업의 대출 신청은 은행과 협력기업간의 약정한도금액 및 거래기한 범위 내에서 인터넷 또는 서면에 의한 방법으로 은행의 전산에 게시된 협력기업의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하기로 합니다.
- ② 협력기업은 이 협약에 의하여 은행에게 양도한 외상매출채권이 정상적 영업활동에 의한 물품의 거래에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대출 신청 시 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 정보를 제출(전산입력)하여야 하며, 협력기업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사실과 다름으로 인하여 은행이 입을 수 있는 금전적인 불이익 등에 대해서는 협력기업에게 그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.
- ③ 은행의 전산상의 사유로 해당일에 대출을 취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은행영업일에 대출 취급하기로 합니다.
- ④ 협력기업에 대한 대출 취급은 구매기업이 은행에게 외상매출채권명세를 통보한 날로부터 “ 은행영업일”이 경과한 채권에 대하여만 대출을 취급하기로 합니다.

제 7 조 (한도 감액, 정지)

- ① 다음 각 호의 1 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, 은행은 구매기업에 대한 통지에 의하여 제 5 조에서 정한 협력기업에 대한 채권발행한도, 총 대출한도 및 이 협약의 유효기간에 불구하고 한도액을 줄이거나 협력기업의 대출취급 금지, 외상매출채권거래 등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.

1. 국가경제·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
 - 가. 국가 또는 은행의 신용등급이 2 단계 이상 하락하여 조달금리 폭등 등의 사유로 은행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
 - 나. 외환유동성위기 등으로 국제기구에 긴급자금을 요청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
 - 다. 은행의 지급여력 부족 등의 사유로 한국은행에 유동성조절대출 등을 요청한 경우
 - 라. 기타 위에서 열거한 사유에 준하는 국가경제·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
 2. 구매기업의 신용상태의 현저한 악화
 - 가. 외부신용평가기관 또는 당행 신용평가에 따른 신용등급이 현저히 하락(2 단계 이상 등)한 경우
 - 나.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결과 감사의견이 부적절/의견거절로 제시된 경우
 - 다.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 제 7 조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한 때
 - 라. 기타 위에서 열거한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 3.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제 11 조에 의하여 거래 제한될 때
- ② 제 1 항에서 정한 사유가 해소되어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은행은 곧 감액, 정지를 해소하기로 합니다.

제 8 조 (협약서 효력)

- ① 이 협약의 효력은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생하고 그 유효기간은 효력발생일로부터 20년 월 일까지로 하며,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서면에 의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합니다.
- ② 양 당사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서면에 의한 해지통보에 의하여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③ 제 1 항 내지 제 2 항에 의해 이 협약이 해지되더라도 구매기업이 이 협약 제 4 조 제 3 항에 따라 통지한 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는 해당 채권의 결제일까지 이 협약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합니다.
- ④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상충되는 사항은 이 협약이 우선 적용되고 다음으로 「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」 제 18 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.

제 9 조 (관할법원의 합의)

이 협약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은행의 본점·영업본부 또는 거래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.

제 10 조 (기타 특약사항)

| |
|--------|
| (서명날인) |
|--------|

이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 부를 작성하여 은행과 구매기업이 각각 1 부씩 보관합니다.

20 년 월 일

(은행)

(구매기업)

주식회사 하나은행 _____ (인)

기업명 : _____ (인)

주 소 :

주 소 :

| | | |
|---|------|-----|
| 본인은 「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」, 「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」 및 「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」의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으며,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는 바 이 협약을 체결함. | 구매기업 | (인) |
|---|------|-----|